

20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09학번 이후-학생공지용)

2026.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목차]

1. 실습일정	1
2. 실습 신청 전 유의사항	2
3. 실습 진행 과정	3
가. 기관섭외	3
나. 실습신청	5
다. 수강신청	6
라. 실습진행	6
마. 실습종결	8
4. 자주하는 질문	10
붙임 1. 실습지도교수안내	12
2. 실습기관의 선정	13
3.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	18

1. 실습일정 (2026학년도 2학기)

순번	내용	일정 및 기한	비고
1	실습신청	2026. 6. 10.(수)~6. 23.(화)	학사정보시스템(My Knou) 온라인 신청
2	수강신청	2026. 7. 15.(수)~7. 20.(월)	일반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하므로, 방송대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실습 오리엔테이션	2026. 7. 18.(토) 또는 7. 19.(일) 진행	출석수업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참석
4	실습진행	2026. 7. 20.(월) ~ 11. 13.(금)	해당 기간 내 4주(160시간) 실습
5	실습평가회	2026. 11. 14.(토) 또는 11. 15.(일) 진행	출석수업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참석
6	실습종결서류 제출	2026. 11. 16.(월) ~11. 20.(금) 각 지역대학 제출	소속 지역대학마다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소속 지역대학에 문의한 후 제출

2. 실습 신청 전 유의사항

○ 평생교육실습은 졸업 필수요건이 아님.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목으로,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 없는 분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타학과 및 졸업생은 본교에서 평생교육실습 불가

‘교육학과 재학생’ 인 경우에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은 실습하는 학기에 복학하여 재학해야 함.)

졸업 후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습 또한 불가능하며, 타학과 학생도 본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학점은행제에서 별도로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하여 교과목을 이수한 뒤, 해당 성적표와 평가서를 가지고 추후 본교 학사운영과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실습 진행을 위해 졸업을 미루고자 한다면 ‘졸업유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졸업유보 신청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이전 신·편입생은 본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대상자가 아님.

평생교육법이 2008년 개정됨에 따라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으로 구분되며, 실습의 형태도 구법과 개정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구법에 해당하는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수강했던 학생은 구법을 적용받고, 2009학년도를 포함한 그 이후 학년도 신·편입생은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단, 2009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학생에게 더 유리한 경우 개정법 적용)

본 실습신청은 개정법 적용 학생 대상이며, 구법 실습진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 평가회 필수 참석

평생교육실습은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를 반드시 오프라인 출석수업으로 참석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일정을 미리 공지해드리는 만큼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출석수업 미참석시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습 진행 과정

○ 실습신청 대상 및 자격

대상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본교 교육학과 재학생(09학번 이후)
자격 요건	<p>◆ 다음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습 신청 가능</p> <p>①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총 90학점 이상 취득</p> <p>②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모두 이수</p> <p>(* 타 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p>

○ 실습 진행 흐름

가. 기관섭외 → 나. 실습신청 → 다. 수강신청 → 라. 실습진행 → 마. 실습종결

가. 기관섭외

실습기관은 법규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한하며, 실습 학생이 섭외

<표 1> 평생교육현장실습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1) 기관찾기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https://lledu.nile.or.kr/>) 참고
- 실습지도교수님께 이메일로 문의
- 실습안내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역별 실습기관 목록] 참고

2) 기관협의: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관으로부터 "실습의뢰결과회보서"와 "기관증빙서류"를 받음.
기관에서 "실습의뢰서"를 요청하는 경우 [[양식1] 실습의뢰서]를 출력하여 수기 작성 후 기관에 제출

- *실습의뢰서: 학생(학과)이 실습기관에 보내는 서류 ([양식1] 출력하여 수기 작성)
- *실습의뢰결과회보서: 실습기관이 학생(학과)에게 보내는 서류 ([양식3] 기관직인필수)
- *기관증빙서류: 해당기관이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종류가 다름.

※ 이 단계에서, 기관에 따라 실습의뢰서를 "전자공문"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전자공문을 요청할 경우 아래 [전자공문 요청 시 메일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학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문 요청 시 메일 작성 방법 (※ 반드시 작성 방법에 따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메일주소: DP44@mail.knou.ac.kr
 - ② 메일 제목: 0000학년도 0학기 평생교육실습 전자공문 의뢰(본인성명)
 - ③ 메일내용
 - 인적사항: 학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기관정보: 실습기관명, 공문 수신명, 기관 연락처
 - 실습정보: 실습기간
- * 실습기관명과 공문 수신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기관에 정확하게 확인 후 공문 요청 바람.
(기관명이 잘못되어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실습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 실습신청 기간에는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전화 미연결로 공문을 못 보내서 실습에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자공문 요청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미연결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학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절차에 맞게 사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 * 메일 수신 확인 후 3~4일 이내 공문을 발송해드립니다.
공문 발송 후 발송 완료 메일 답변을 드리오니, 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 제공한 [지역별 실습기관 목록]은 단순 참고용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는 기관이더라도 실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학과에서 제공한 [지역별 실습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에서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붙임2] '평생교육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선정'을 참고하여 실습적격기관인지 실습기관에 자세히 문의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신청서 제출 후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 ① 실습신청서 ([양식2], 학생이 작성)
- ② 실습의뢰결과회보서
- ③ 기관증빙서류

나. 실습신청

1) 실습신청기간: **2026년 6월 10일(수) ~ 2026년 6월 23일(화)**

- 신청기간 연장 및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2) 실습신청방법: 첨부파일 [평생교육실습 신청 매뉴얼]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 경로: MyKnou-실습-평생교육실습
- 신청 자격 적격(예정)자만 신청 가능
- 실습신청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업로드 서류: ①실습신청서, ②실습의뢰결과회보서, ③ 기관증빙서류

3) 신청상태확인: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신청상태 [신청] 이면 정상적으로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학과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 [접수] 및 [승인] 처리
- [신청] 상태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상태에서는 내용변경 불가

※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실습신청 전,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연락처, 메일주소)를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경로:  설정→개인정보 변경하기)
- ※ 실습 신청 진행 중 실습기관 입력 시, 본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02-3668-4660 / DP44@mail.knou.ac.kr)
- ※ 신청기간 마지막 날에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미리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학기 도중에는 소속지역대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수강신청

- 1) 수강신청기간: **2026년 7월 15일(수)~2026년 7월 20일(월)**
- 2) 신청방법: 일반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
 - 방송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 실습신청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함.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수강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라. 실습진행

- 1) 실습 오리엔테이션: **2026년 7월 18일(토) 또는 7월 19일(일)**
 - 실습 시작 전 안내사항 등 오리엔테이션 진행
 - 오프라인 출석수업으로 진행되며 필수 참석
 -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할 경우 실습진행 불가
- 2) 온라인 강좌 수강
 - 개강 후 U-knou 캠퍼스에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5개 강의를 수강
 - 개강일(강의 오픈): 2026. 8. 14.(금) 예정
 - 가능한 강의 수강 이후 실습에 나가길 권장

3) 실습진행: 2026년 7월 20일(월) ~ 11월 13일(금) 중 4주(20일, 160시간)

실습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마쳐야 하며, 기간 이전·이후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최소 4주간, 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함.
-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 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해야함
- 주말이나 야간에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총 16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해야 함.
- 주 40시간 초과는 인정되지 않음(예: 8시간x7일=56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형태에 따라 아래 표 [실습 인정 시간]을 참고

실습 인정 시간	
주중(월~금)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말(토, 일)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야간(18:00 이후)	하루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오전(12시 이전)	하루 3시간 허용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에도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습일지의 [식사시간]란에 ‘해당없음’ 을 기재함 	

4) 실습평가회: 2026년 11월 14일(토) 또는 11월 15일(일)

- 실습종료 후 평가회 진행
- 오프라인 출석수업으로 진행되며 필수 참석
- 평가회에 불참할 경우 실습과목 이수 불가

마. 실습종결

1) 실습종결서류 제출

주체	제출서류	제출 기한 및 장소
실습생	① 평생교육현장실습 보고서 표지【양식4】 ② 실습일지【양식5】 ③ 첨부자료	* 제출 기한 : 2026.11.16.(월) ~ 11.20.(금)
실습 기관	④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원본)1부【양식8】 ⑤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원본)1부【양식9】 기관에서는 인비친전(밀봉하여 도장)으로 실습학생의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 👉 학생이 밀봉된 서류를 받아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가능	* 제출 장소 : 소속 지역대학/학습센터/학습관 * 제출 방법 : 우편 및 방문 제출 (소속 지역대학마다 제출 기한 및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소속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실습 담당자에게 문의)

○ 실습 후 결과물 서류 편철 방법

- 학생이 제출하는 실습결과물은 학과에서 제공한 표준 서식을 사용
- 편철순서: ①평생교육실습보고서(표지), ②평생교육실습일지, ③첨부자료
 ①②③순서대로 한권으로 편철한 뒤, 학생 본인이 소속된 지역대학으로 제출

※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으로 종결서류 제출

※ 지역대학의 사정에 따라 학습센터/학습관에 제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대학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학습관은 대전충남지역대학으로 제출

※ 전북지역(군산/익산/정읍/남원) 학습관은 전북지역대학으로 제출

※ 강원지역은 강원지역대학 및 학습관(강릉, 원주)으로 제출

※ 광주전남지역(목포/순천/해남/여수) 학습관은 광주전남지역대학으로 제출

※ 북부학습센터(동두천/의정부)는 서울지역대학으로 제출

2)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평가

- 성적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본교 교육학과 교수진이 본교 교육학과 교수진이 성적 부여.

 - 성적근거자료
 - 실습기관이 작성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지」
 - 실습지도교수가 작성한 「학생 실습지도결과 보고서」

 - 가산점: 본교에서 <평생교육실무론>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실습>교과목 평가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
- ※ <평생교육실무론>교과목은 2024학년도부터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가산점 제도는 202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까지만 해당됨.
(2027학년도 실습부터는 가산점 제도 없음)

4. 자주하는 질문

Q. 실습신청을 사전에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기별 실습 신청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A. 학과에서는 실습교과목 수강의 편의성을 위하여 1, 2학기 모두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 검토 및 실습기관 검증 등을 위하여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실습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당 학기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실습신청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학과 공지	실습 신청	실습 진행	성적처리
1학기	11월 중	12월 중	1월~5월	6월
2학기	5월 중	6월 중	7월~11월	12월

※ 통상적인 시기를 기재한 것으로 학기마다 조금씩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일정 등은 해당 학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필수과목을 다 이수했는지 확인해주세요.

A. 학과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맞춤정보 로그인 후, 성적표에서 총 이수학점이 90학점 이상인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총 4개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지, 이 4개의 교과목에서 모두 각각 F가 아닌 D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목은 실습 이후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Q. 공지사항에 올라온 [지역별 실습기관 목록] 에서만 기관을 찾아야 하나요?

A. 학과에서 제공한 실습 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목록에 없는 기관이라도, 실습기관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학과에서 제공한 목록의 기관은 참고 사항일 뿐, 목록에 있는 기관이라도 기관 사정에 따라 실습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

Q. 이번 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격 요건 [예정]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성적 발표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 요건 [부적격]으로 실습 신청이 미승인 처리됩니다.

Q. 필수과목 성적 평균이 80점 이하입니다, 실습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평균 80점 이상이라는 점수 조건은 자격증 취득 시에 필요한 조건으로, 실습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실습신청은 ①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이고, ②평생교육사 취득 관련 필수과목 4과목을 이수한 ③교육학과 재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번 학기를 마치면 130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할 수 있나요?

A. 졸업학점 130학점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졸업되며, 졸업생이 되면 본교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휴학 중입니다. 실습을 할 수 있나요?

A. 휴학 중인 학기에는 실습이 불가하고, 실습을 진행하는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복학 전 '실습 신청' 기간에 실습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생이 2025학년도 2학기에 실습하고자 한다면, 1학기 말에 올라오는 2학기 실습안내 공지를 참고하여 실습 신청을 먼저 하고, 2학기에 복학하면 됩니다.

Q. 해외거주학생입니다. 평생교육실습이 가능한가요?

A. '해외거주학생'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강을 원할 경우 [해외→국내]로 소속지역변경이 필요하고, 국내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문의: 교육학과(02-3668-4660 / DP44@mail.knou.ac.kr)

실습신청기간 중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실습지도교수 안내

‘실습지도’라 함은 실습생 소양교육, 실습기관 적절성 평가, 출장에 의한 실습기관에서의 면대면 지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모든 지도 활동을 의미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서는 2009학번 이후 학생들의 평생교육실습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실습지도교수를 위촉**, 학과 교수님을 대신하여 실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습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등 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음.

○ 평생교육실습 실습지도교수의 역할

- ①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최종 평가회 실시
- ② 평생교육실습 기관 방문 및 실습생 실습현황 점검과 지도
- ③ 실습생의 실습 관련 요구 및 애로사항 경청
- ④ 실습과 관련된 정보 제공

평생교육실습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간동안 실습생의 지도와 더불어 실습기간동안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므로, 실습 진행 중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평생교육실습 실습지도교수에게 연락.

○ 평생교육실습 실습지도교수에 대한 정보

매학기 실습지도교수는 [교육학과 홈페이지→ 학과소개→ 평생교육실습 지도교수 소개]에서 확인가능 (<https://learn.knou.ac.kr/learn/4612/subview.do>)

[참고] 2026-1학기 실습지도교수

위촉지역	성명	e-mail
서울	장나리(선임)	gaenaleel@naver.com
	이현실	happyhan5@naver.com
경기	이수영	pisyy0003@naver.com
	김현숙	haun1031@naver.com
강원	손정연	jyson1203@korea.kr
충북, 대전충남	안은미	vuddi99@hanmail.net
광주전남, 전북	김경화	kimkyunghwal@naver.com
대구경북, 울산	김정화	jhyoun11@naver.com
부산, 경남	박정화	bae867@hanmail.net
인천, 제주	박정애	okpro99@naver.com

[붙임 2] 평생교육현장실습 실습기관의 선정

○ 실습기관은 법규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한하며, 실습 학생이 선정.

<표 1> 평생교육현장실습 대상 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필수 확인 사항) 적합한 실습 기관의 조건

① 실습기관은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유형별 분류(2014.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비영리단체등록증, 시설 신고증, 등록증, 지정서 등 제출)이어야 함.

② 실습지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실습지도자 1인당 동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여야 함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 ④ **실습기관의 실습프로그램은 현장실습의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현장실습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현장실습의 목적]

-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현장실습의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와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 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자신의 업무수행이 그대로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실습지도자의 관리감독 하에 체계적인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실습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재직기관에서 평생교육실습이 이루어질 경우, 재직기관장과 실습과목 담당교수가 모두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 근무 시간 외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

⑥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실습교육 내용은 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조함

- 필수항목: 모든 실습교육에 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

구분		실습내용
필수항목	1. 오리엔테이션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2. 행정업무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4. 실습평가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선택항목: 3개 내용 중 최소 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

구분		실습내용
선택항목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 **교육학과 실습 운영에 대한 내부 규정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 인정 불가)**

- ① 실습생 자신이 기관장인 경우
- ② (원장 1명이 직원의 전부인) 사설 평생교육원에서 실습생이 ‘지도를 받는 실습생’으로서가 아니라 ‘기관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담당하는 경우
- ③ 실습 기관이 실습비의 일환으로 사전에 해당 실습기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④ 실습 기관이 실습 중간에 실습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⑤ 실습을 받는 중, 실습 기관이 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⑥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업무보다 사서 업무 위주로 하는 경우, 청소년 상담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서 상담업무를 위주로 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내용과 중복된 내용의 실습을 하는 경우, 방과 후 지도교실에서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육업무나 방과 후 학습지도업무 위주로 실습을 하는 경우 등

※ 위에서 제시하는 실습 기관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위의 학과 규정에 위반이 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F 처리됨. (실습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실습 인정 불가)

[참고1]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구분	기관유형		예시	
평생교육법	①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세종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강원평생교육진흥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②유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가·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교육청에 등록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③유형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④유형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법령	⑦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형태는인정불가)	
	⑧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⑨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⑩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

[붙임 3] 평생교육실습 관련 서식

【양식 1】 실습의뢰서

실 습 의 료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재학생 평생교육 현장실습 협조 의뢰서

1. 항상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아래 학생의 현장실습을 귀 기관으로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실습생명	생년월일	학과/전공	학년/학기	실습기간	평생교육 관련 경력
		교육학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장



담당자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 담당 조교

시행 교육학과-001 (2026.5.2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86(03087)

전화 : (02)3668-4660 전송 : (02)2088-4309

학과장 김의태

접수 - (. . .)

/ <http://learn.knou.ac.kr>

/ E-mail : DP44@mail.knou.ac.kr

【양식 2】 실습 신청서

실 습 신 청 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역대학/ 학습관		학과/전공	교육학과 (타학과신청X)	학번	
현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E-Mail					
총 취득학점	학점(취득예정학점포함)				

2. 실습의뢰 내용

실습 기관			
실습 기간	~	(기간 변경은 추후 실습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변경)	
실습 시간형태	주간 (), 야간 (), 주말(), 주•야간 (), 야간•주말()		

3.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현황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도/학기)	교과목명	이수시기
평생교육론	예) 2023년도 1학기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을 신청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귀중

【양식 3】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 실습의뢰 결과

수락합니다(수락시 하단의 내용 기재) 거절합니다

2. 실습 기본사항

① 실습생 정보

실습생명		실 습 기 간	
학 번		소속 지역대학	

② 실습기관 정보

기 관 명		기 관 유 형	[참고 1] 참조
전화번호		실습운영부서	
주 소			

③ 실습지도자 정보

성 명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급 수	
생년월일			취득기관명	
직 위			취 득 일	
			자격번호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관명	소속부서	경력기간(년월)	담당업무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총 경력개월		총 개월	

③ 요청사항

필요서류	
실습비	원(실습개시일 납부 요망)
참고사항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서 의뢰한 현장실습 의뢰 결과를 회보합니다.

실습기관의 장 직인

※ [붙임]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1부.

【양식 4】 실습일지 표지

평생교육현장실습 보고서

(2026학년도 2학기)

관리번호	
------	--

평가자확인	
-------	--

과	제	학년	성명										점수
			전화 (휴대폰)										
학			-										

※ 학번은 반드시 신학번을 기재하여야 함

실습기관명		기관 소재 지역	
실습기간		실습지도교수	
실습내용			



※ ‘관리번호’ 및 ‘평가자 확인’, ‘점수’란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5】 실습일지

실습일지(0일차)

실습일	년 월 일(요일)				실습지도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식사시간	실습시간	지각/조퇴결근여부(사유)	실습시간 누계 시간
실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일정에 따른 업무명 순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기술 ※ 실습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술(실습일지는 개인일기가 아니므로, 실습일과에 대한 개인의 감정, 의견, 느낌 등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함) ※ 프로그램 참관(보조진행) 시, 단순히 '000프로그램 참관'이 아닌, 프로그램의 목적, 주요내용, 강의자의 진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 					
실습소감 및 자기평가 (협의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내용에 관한 실습생의 의견 및 자기평가를 기술하되 사실에 기초하여 기록하며 발전·진행적으로 기록 ※ 실습지도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기록 ※ 해당 일자의 실습업무 수행을 통해 실습지도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사항 기록 					

【양식 6】 실습지도기록서

실습지도기록서

실습생명:

실습지도자 :

(서명 또는 인)

주차	실습지도자 의견
1주차	※ 실습생의 강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 제시 ※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을 주차별 작성
2주차	
3주차	
4주차	

※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 중 40시간을 1주로 산정하여 작성

【양식 7】 실습생 평가서

실습생 평가서

실습생명		생년월일	
양성기관명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	
근무태도(10)	근무사항	·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	5		
	태도	· 성실성, 근면성, 친절성, 적극성, 예절 등	5		
자질(15)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 실습목표 설정 · 실습세부계획 수립 등	5		
	가치관	· 평생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신념 · 실습생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등	5		
	관계형성	· 기관 내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대인관계 · 동료실습생과의 관계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이해 등	5		
학습지도 능력(50)	필수 항목	기관이해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의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이해 · 실습기관의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이해 ·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10	
		모의 프로그램 개발(Ⅱ)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5	
	선택 항목 (택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0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연구조사 활동(15)	필수 항목	모의 프로그램 개발(Ⅰ)	·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 학습자 요구분석(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10)	필수 항목	행정업무	· 기안 및 공문서의 모의작성 여부 · 사업예산(안) 편성	10	
총 점			100		

※ 「[참고 3] 평생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실습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고,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에 평가점수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항목 부분은 실습내용으로 택 1하여 실시한 항목만을 기재하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양식 8】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2.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주, 총 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소속부서명 포함 기재)		(담당업무 기재)	(주요업무 상세 기재)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사항 및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재)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 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습기관의 장 직인

【양식 9】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 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명		
	실습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총 일)			
	실습시간	총 시간 (매주 요일부터 ~ 요일까지)			
실습기관 정보	실 습 기 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참고 1] 참조	
		전화번호	실습운영부서		
		주 소			
	실 습 지 도 자	성명		평생교육사 자격소지	급수
		생년월일			취득기관명
		직위			취득일
					자격번호
	실습지도자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관명	소속부서	기간(년월)	담당 업무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총 경력개월		총 개월		
<p>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실습지도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실습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p>					